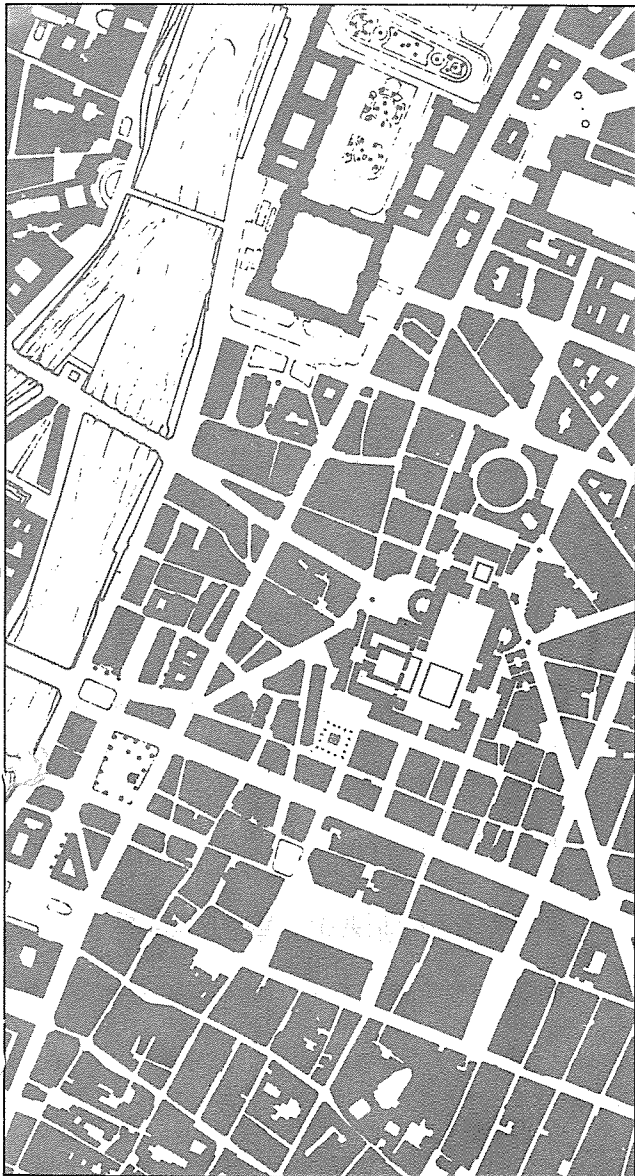


— 建築法에 關한 事項 —

建築行政相談

81. 7. 11~8. 10



- 문1 : 지하층 설치 적용 규정은?
 답 : 지하층 200m² 이상, 6층 이하는 건축연 면적의 1/10 이상 확보하여야 됩니다.
- 문2 : 기숙사의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간주하여 아파트 심의 기준에 적용시켜야 하는지 여부?
 답 : 건축법 시행령이 작년 개정되기 전에는 공동주택에 속하였으나 변경후에는 제외되었으므로 심의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문3 : 미관지구내 3m 후퇴한 부분에 주차 배치를 할 수 있는지요?
 답 : 3m 후퇴부분에 대하여 주차는 물론 화단등 식수도 할수 없습니다.
- 문4 : 인근북측에 10명대지가 있는데 건축물이 없습니다. 건축을 할때 이 대지경계선에서도 일조권에 필요한 거리를 띄어야 합니까?
 답 : 띄어야 합니다.
- 문5 : 대지가 도로에 면한부분이 2M인데 대지 연장길이가 30M입니다.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 막다른 도로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대지로서 폭원이 3M 이상이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 문6 : 학교건축에서 천정고는?
 답 : 천정에 보가 없으면 천정까지며 보가 있을때는 보 밑까지를 천정 높이로 한다.
- 문7 : 주거지역에서 1.5m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여관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 건축법상 가능합니다. (관계부서인 위생과 및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것도 있음)
- 문8 : 경사진 대지에 4면중 1면이 노출되어 차고를 설치할 경우 지하실로 볼 수 있는지요?
 답 : 4면중 일부분이라도 2층고 높이에 3분의 1이상이 지상으로 노출되면 지하층이 아닙니다.
- 문9 : 대중음식점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절차 관계는?
 답 : 대중음식점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받고져 할 경우 설계자의 설계를 필요로 하여 해당구정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10 : 미관도로와 후면도로가 고저차가 심한 경우 건축물의 층수제한은 어느 도로를 기준하여 산정하는지요?
 답 :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목적은 주변환경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미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층수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문11 : 주거지역내에 200m² 이상의 택시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니까?
 답 : 주거지역내 150m² 이상의 차고는 불가능합니다.
- 문12 : 준공업지역내 비공해공장 건축이 가능한니까?
 답 : 건축법상 지장은 없으나 서울지역에서는 공업배치법에 위배되므로 건축이 불가합니다.
- 문13 : 주택의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산정시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를 때 평균치로 하는지요?
 답 :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산정시 각 부분별로 산정하여야 함.
- 문14 : 주거지역안에서의 주택(기준)에 별도로 점포를 증축

함 수 있는지요?

답 :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법이 허용하는 용도의 변동점 또는 기타 건축법의 제한에 지장이 없을 때는 증축이 가능합니다.

문15: 병원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허가사항인지요?

답 : 예.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문16: 여유공지가 많아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때문인지요?

답 : 건축법 제39조 규정된 전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8분의 1 이상의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수 있는 여유공지가 있을 경우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17: 로라스케이트장은 건축법 시행령 부표에서 어느 용도로 분류하는지요?

답 : 건축법 시행령 부표 14에 의거 위락시설 중 유기장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문18: 6층이하로 건축할 때 엘리베이터 시설을 안해도 되는지요?

답 : 6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 150m² 미만일때에 안해도 됨.

문19: 대수선 범위를 알려주십시오.

답 : 건축법 시행령 제 2 조 13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建築條例에 關한 事項 -

문 1: 미관지구내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얼마를 후퇴하여 건축이 가능합니까?

답 : 1~5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모두 30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문 2: 미관지구내의 조례의 변경사항이 있는지요? (전폐율과 용적율에 대하여)

답 : 미관지구내에는 전폐율과 용적율이 변경된 사항이 없이 종전대로 하시면 됩니다.

문 3: 조례에 아파트부분 조례가 누락되었는데 그 적용은?

답 : 아파트부분조례가 누락되었어도 서울시 행정지도로 종전대로 적용됨

문 4: 도시계획철거로 인한 대지적용 범위는?

답 : 서울시 조례로 지정된 바에 의하면 대지면적의 최소면적의 1/2 까지 도시계획철거로 인한 잔여대지에 대하여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 5: 풍치지구의 용적율은?

답 :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풍치지구는 60%에서 90%로 완화하였습니다.

문 6: 연립주택 12세대를 시공코져 하는데 전폐율과 용적율은?

답 : 연립주택 12세대인 경우 서울의 경우 전폐율은 40% 미만, 용적율은 100%미만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 7: 서울시 조례에 공동주택조례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적용은?

답 : 서울시 조례에 빠져있으나 공동주택은 당초 조례에 준하여 행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 8: 서울 종로3가 미관지구인데 전폐율과 용적율은?

답 : 서울 4대문 내 간선도로변은 전폐율 40%에 용적율67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9: 제 2 종 미관지구 상업 지역으로 85평에 건축이 가능한

지요?

답 : 제 2 종 미관지구는 330m² (100평)이상의 대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할된 토지로 추후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을 경우 령180조 4항에 의하여 그 변경시로부터 10년간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문10: 서울 영등포관내 제 2 종미관지구에 접한 대지면적이 45평위에 기존 한옥이 있는데 건물이 노후 위험하여 대수선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요?

답 : 기존건축물의 대수선하는 경우는 미관지구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11: 서울시 건축조례에 풍치지구가 완화되었다는데 전폐율과 대지면적은 얼마이며 언제부터 시행하는지요?

답 : 서울시 건축조례가 81. 6. 27자 개정되고 동조례는 공고일(81. 6. 27)부터 시행중이며 동 조례중 풍치지구에 한하여 전폐율은 30% 대지면적은 200m²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12. 제 2 종미관지구에 있는 대지 54평에 건축이 가능합니까?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답 : 제 2 종미관지구내의 대지 최소면적은 330m²이나 이에 미달되는 대지는 추가로 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70평까지도 가능하며 도시계획 시설로 자투리땅이 된 경우에는 100평의 1/3 인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13: 주거지역 제 4 종미관지구이며 도시계획으로서 10 평이 저축 나머지 41평으로서 기설건축 또는 본 건물이 가능한지요?

답 : 도시계획으로서 자투리땅은 대지면적의 1/3 이상이면 가능하므로 본건물은 물론이고 기설건물도 3층까지 가능하나 5년까지 시한부이며 준공검사와 가옥대장 등재는 불가함.

문14: 풍치지구내 별동으로 10평 미만의 방만 증축이 가능한지요?

답 : 가능합니다.

문15: 서울 등촌동 236-1 환지지구로서 제 2 종 미관 지구에 대지 62평 소유자로서 건축가능한지요?

답 : 제 2 종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100평이고 서울시 건축조례 제42조 규정에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기준미달 대지에 대해 최소대지면적의 1/3 이상이면 가능하나 동 주변은 도시계획 시설로 기준미달된 대지가 아니므로 현재로는 건축이 불가하겠읍니다.

문16: 풍치지구내 대지면적 198m²은 건축할 수 있는지요?

답 : 풍치지구내 대지면적 200m²의 최소면적에 70% 까지의 30%를 건축이 가능함.

문17: 미관도로에서 정남북방향에 일조권을 위한 건축을 높이 제한은?

답 : 20m 이상도로에 접한 대지는 상호간에 1.0m 이상 거리를 둔다.

- 都市計劃法에 關한 事項 -

문 1: 서울시 길동의 경우 주거지역인데 공용 주차장을 설치코자 할 때 그 가능 여부는?

답 :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시설고시를 득하면 가능합니다.

문 2: 제 2 종미관지구내에서 현재공사중인 점포, 사무실을 예식장용도로 변경 가능합니까?

답 : 반경 5km이내에서는 예식장 신규허가는 받을 수 없으

나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철거 이전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문 3 : 주거지역내 시장용지에 5층 시장건물의 3층부분을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 : 시장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장건물은 도시계획시설 계획 인가를 받아 건물의 용도, 규모, 위치를 정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것으로서 도시계획 실시인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 駐車場法에 關한 事項 -

문 1 : 안양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어떻게 설치하여야 합니까?

답 :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일반 지구에 대해 2,000m² 이상 건축물에 400m² 마다 1대의 비율로 설치토록하고 주차장 정비지구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2 : 지하실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동 주차 면적은 주차대수 산정에 포함되는지요?

답 :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동부분 면적은 주차대수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문 3 : 주차장의 옥내에 설치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입니까?

답 : 옥내주차장은 소요면적의 50%만 가능합니다.

문 4 : 도심지내 기계식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답 : 주차장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받아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 5 :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에 주차장 대수 산정시 어떻게 하는지요?

답 :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같으므로 건축연면적 150m² 당 한대의 비율로 산정해야 됩니다.

문 3 : 용도변경시에 주차장 설치를 하여야 건축허가가 되는지요?

답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변경(건축)하는 면적이 150m² 미만일때는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되지만 150m² 이상의 변경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건축물에 부설되는 주차장 기준이 강화 되는 쪽으로 용도변경할때는 강화되는 기준만큼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문 7 : 주차장 설치기준중 옥내 및 옥외의 설치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답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시 전폐율이 50%이상 일때는 해당 주차대수의 50%이상을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고 전폐율이 50%이하일때는 옥외에 26%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 其他 規程에 關한 事項 -

문 1 : 건축허가시 건설업자가 선정되어야 할 대상은?

답 : 건축법상 일반건축물은 150평 특수건축물은 200평 이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를 선정 시공토록 하여야 합니다.

문 2 : 당구장이 위락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여부는?

답 : 건축법상 당구장은 위락시설이 아니나 보건사회부 규정(81. 6. 2)에 의하면 당구장이 유키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 3 :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에 대하여 사업승인토록 하는 기준이 강화되었다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81. 8. 24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로 확대시행 되었음.

문 4 : 2급 건축사로서 3층 기존건물 위에 1층을 증축설계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 : 2급 건축사 업무 범위가 3층까지 1,500m²이므로 귀하의 경우 설계할 수 없습니다.

문 5 : 연립주택의 세대당 대지면적의 한계평수가 있는지요?

답 : 연립주택의 대지면적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행정지도로 세대당 25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6 : 태양열 주택인 경우에 건축허가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 : 건축허가 설계도면은 태양열 에너지 연구소에 추천을 받은 도면에 한해 일반건축물과 같은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7 : 연립주택 3층허가가 가능한지요.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얼마인가요?

답 : 3층의 연립주택의 허가가 가능하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용도지역지구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문 8 : 지목이 임야인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서울의 경우 지목이 임야인 경우 지목변경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 9 : 건축물 이력표찰은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모두 적용하는지요?

답 : 건축물표찰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병용주택, 아파트에 한하여 준공시에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10 : 예식장계획에 있어 객실에 출입문의 수는 몇개로 하여야 합니까?

답 : 예식장 영업허가기준에 건물전체의 출입구는 2개 이상이며 각 객실의 출입문도 2개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문11 : 태양열 주택 건축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용자를 받을 수 있고 세제상의 혜택(취득세, 등록세 면제)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12 : 지하실에 대해서는 주택채권을 사지 않는다면 작업장 용도로는 사야 하는지요?

답 : 작업장도 거실에 포함되므로 지하실내의 거실은 주택채권을 사야합니다.

문13 : 건설업자 선정한계는?

답 : 건설업법 제 4 조규정에 의거 일반건물인 건축연면적661m²와 특수건축물 495m² 이상인 경우 시공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음.

다음은 건설부령 제301호(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건설부령 제304호(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부고시 제327호(자동방화샷다기준), 건설부고시 제330호(접도구역지정에 관한 고시)를 옮긴 것이다.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건설부령 제301호(1981. 7. 15 공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운동장등 시설에 대한 결정) 일단으로 구획되는 시설 중 운동장(종합운동장에 한한다)유원지 및 유통업무 설비에 대하여는 당해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조성하게 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규칙에서 “도로”라 함은 폭 4 미터 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제13조 본문중 “다음표의 기준이상의 가각을 전제하여야 한다”를 가각의 절제변의 길이가 다음표의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 2 및 45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 2 (공원등의 종류) ① 이 규칙에서 “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말한다.

제45조의 3 (공원등에 대한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공원 및 녹지에 대한 결정기준과 설치기준은 각각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 제 2 항제 2 호중 “시장법 제 2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를 “시장법 제 2 조제 1 호 및 제 3 호”로 한다.

제 7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 규칙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사업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를 비축 및 저장하는 시설과,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 공급하거나 대리점이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석유의 저장시설 또는 송유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74조 제 1 호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학교의 종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 81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제85조 제11호중 “중학교는 2 개 내지 3 개”를 “중학교는 2 개”로 하고, “고등학교는 3 개 내지 4 개”를 “고등학교는 2 개 내지 3 개”로 하며,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결정기준은 이미 개발된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현황에 따르도록 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2 천 500세대를 1 개 근린주거구역의 결정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거나 설치한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부령 제304호(1981. 8. 31 공포)

제 2 조 (제 1 항제 3 호에 터목 및 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 및 방송시설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퍼.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전라남도 담양군에 신설하는 중의 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제 3 조 제14호중 “커”목을 “퍼”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자동방화샷다의 기준

건설부고시 제327호(1981. 8. 27)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96조 제 1 항의 자동방화샷다(이하 “샷다”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설치위치

샷다는 건축법시행령 제95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감중 방화문으로부터 3 m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자동방화샷다의 구성

샷다는 전동 및 수동에 의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및 온도퓨즈장치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의 열 또는 연기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재료·품질 개폐장치 및 연동폐쇄장치등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재료 및 품질등

샷다의 재료, 구성부재, 형상, 가공조립 및 설치는 한국공업규격의 “방화샷다(KS F4510)중 감중방화문용 샷다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개폐장치

- (1) 샷다의 개폐장치는 전동 및 수동에 의해 수시로 작동되어야 하며,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자중에 의한 폐쇄가 가능하여야 한다.
- (2) 샷다의 개폐용 전동기는 한국공업규격의 “저압3상유도전동기(KS C 4202)” 또는 “단상유도전동기(KS C 4204)”에 적합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한다.
- (3) 샷다의 개폐기와 감아올리는 샤프트를 연결하는 “샤프트 로울러체인”은 한국공업규격의 “전동용로울러체인(KS B 1407)”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연동폐쇄장치

샷다의 연동폐쇄장치는 화재발생시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및 온도퓨우즈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온도퓨우즈, 연동 제어기, 자동폐쇄장치 및 예비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 (2) 연기감지기는 소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3) 열감지기는 소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상식 또는 정온식 감지기로서 정온점 또는 특종의 공칭작동온도가 60~70℃의 것으로 한다.
- (4) (2)의 연기감지기와 (3)의 열감지기의 설치방법은 소방시설기술기준령중 자동화재탐재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5) 연동제어기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서 신호를 받은 경우에 자동폐쇄장치에 가동지시를 주는 것으로서 화재에 의한 열로 인해 기능이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수시로 예비전원 및 연동장치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6) 온도퓨우즈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인 경우의 온도퓨우즈장치는 50℃에서 5분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고 90℃에서 1분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 (7) 예비전원은 자동충전장치, 시한충전장치를 가진 축전지로서 충전을 하지 아니하고 30분간 계속하여 샷다를 개폐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성능시험

샷다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을 한 결과 모두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가. 시험체

시험체의 재료 및 구성은 가이드레일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고, 그 크기는 가로 2,200mm, 세로 2,200mm의 시험로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1) 가열시험

- (가) KS F 2257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의한 가열등급 2시간 가열시험으로 한다.
- (나) 시험은 2회로 하고 시험결과 판정은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에 의한 B종의 성능을 가진 것을 합격으로 한다.

(2) 차연시험

- (가) 시험장치는 시험체의 전면에 등분포 공기압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림 1과 같은 구조로 한다.
- (나) 시험장치에 부착한 시험체를 원활하게 개폐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후 폐쇄상태로 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다) 시험체의 양면압력차를 1m²당 1kg, 2kg 및 3kg 차이로 각각 3회씩 시험체의 양면에 대한 통기량을 측정한다.

(라) 시험결과는 표준상태(공기온도 20℃ 1기압)의 단위면적(m²), 단위시간(분)당의 통기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마) 시험은 1회로 하고 시험결과 판정은 압력차가 1m²당 2kg의 경우에 측정값 모두가 매분 1m²당 0.2m³ 이하이어야 하며, 각 압력차에 대한 측정값은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3) 충격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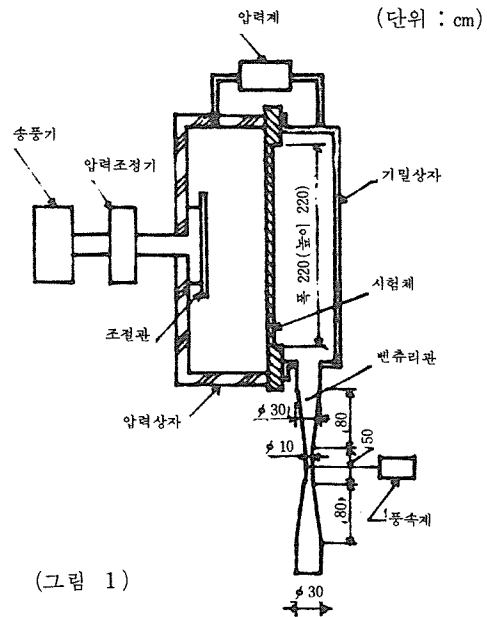
(가) 충격시험의 시험체는 가열시험의 종료 후 30분 이내의 시험체를 이용한다.

(나) 그림 2에 표시한 바와 같이 중량 10kg, 직경 20cm의 구상모래주머니를 충격개속의 직상에 최출로 매고 충격개속으로부터 연직거리 50cm 높이에서 낙하시킨다.

(다) 시험체의 충격개속은 가열시험중 구조상 약점부를 3개 선정하여 각각 1회씩 충격을 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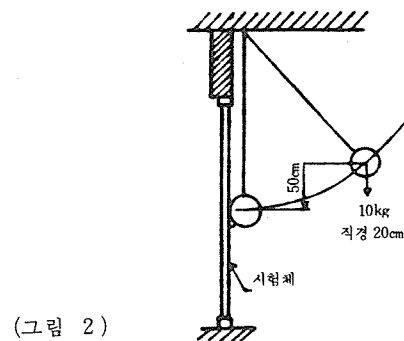
(라) 시험은 2회로 하고, 시험결과 판정은 파피, 구멍이 생기거나 틈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차연시험장치



(그림 1)

충격시험장치



(그림 2)